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
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3. 1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촌정책과)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농어업·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음.

이에,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현행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던 것에서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말도록 변경하여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 내용

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현행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하던 것에서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말도록 변경함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”를 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무국의 운영)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<u>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겸임한다.</u>	제7조(사무국의 운영) ----- ----- ----- <u>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1 - 1518~9